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527
----------	------

제출년월일 : 2011년 5월 일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제천시자원관리센터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 자원관리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규정을 수립 필요

2. 주요내용

- 자원관리센터 처리 대상폐기물과 처리방법(안 제4조)
 - 대상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 매립처리 :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과 천재지변 및 시설의 보수·점검 사유 발생시
-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 관리(안 제5조~제6조)
- 자원관리센터의 폐기물 반입허가 및 제한(안 제7조~제8조)
- 자원관리센터 사용자에 대한 반입수수료 징수 (안 제9조)
- 소각열의 공급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의안전문 : 붙임

4. 기타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기간 : 2011. 2. 24 ~ 3. 16(20일간)

- 의견접수 : 1건, 3개 항목
- 의 견 자 :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장 신종철
- 의견내용 : 붙임

나. 2011년도 제4회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 수정 가결

- 5. **관계법령** : 붙임(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6.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 : 해당 없음

- 첨 부
- 1. 의안전문 1부.
 - 2. 입법예고 제출의견 1부.
 - 3. 관련법령 1부.
 - 4.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제천시자원관리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및 위치) 제천시자원관리센터(이하 “자원관리센터”라 한다)는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로 구분하며, 제천시 북부로 1860(신동)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립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시설로서 관리형 매립시설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음식물처리시설”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건식 가공하여 사료화 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침출수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와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시설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7. “폐기물운반차량”이란 가연성, 불연성 및 대형(가구류)폐기물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대상폐기물 및 처리방법) ① 자원관리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제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제4조(대상폐기물 및 처리방법) ① 자원관리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제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폐기물에 한한다.

1.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생활폐기물
 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대상 폐기물
 3. 시장이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음식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보수·점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타 시설로 위탁 처리 할 수 있다.
- ④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잔재 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소각이나 매립처리 할 수 있다.
- ⑤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탈수 슬러지는 법 규정을 준수 한 후 매립처리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2조제2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센터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
2.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의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각 시설의 처리용량(소각 50톤/일, 음식물 40톤/일) 규모 이상의 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재활용선별시설의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고용인력 7명 이상으로 3년 이상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침출수처리시설의 경우 폐수관리대행기관을 등록하고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일반 사업장의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폐수처리 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시장은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일괄 위탁할 수 있다.
 - ③ 자원관리센터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 ④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시장은 제5조에 의하여 위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와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제7조(위·수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반·출입 허가 및 계량카드 발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집·운반업자나 개인이 생활폐기물 반·출입을 신청하는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반입량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업자에게 반·출입을 허가 할 때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과 공차 중량을 계상한 계량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고, 계량카드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시장에게 폐기물 반·출입개시일 3일 전까지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폐기물 운반차량의 정면 우측하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과 대형폐기물 및 소각재 반출시 매 회 계량을 하여야 한다.

제9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휴업, 폐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자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사업장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4. 타 시·군·구의 쓰레기를 반입한 경우
5.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폐기물 관련법령 및 반입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천재지변, 처리시설물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과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반입수수료의 부과) ① 시장은 자원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각 및 매립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반입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반입 수수료는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징수 한다.

제11조(반입수수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된 폐기물
 2.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써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 ② 제1항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반입 2일 전에 폐기물 발생사유, 발생자, 발생일시, 반입차량, 반입량, 반입 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 운전자가 자원관리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제13조(소각열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중 음식물처리시설과 폐열발전시설에서 사용하고 남은 소각열은 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소득사업이나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소각열의 유상 공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계량카드 (신규,재)발급신청서(제8조 관련)

1. 소속 기관 :
2. 차량 번호 :
3. 폐기물 종류 :
4. 발급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량카드 (신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천시장 귀하

처리내용

1. 재 발급 일 : 년 월 일
2. 계량카드번호 :
3. 기존카드회수 : 유 무
4. 달 당 자 :

결 재	담당자	팀장	과장

㉠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 (제8조 관련)

(전면)

<p style="text-align: center;">제천시 자원관리센터</p> <p style="text-align: center;">NO. 001</p>
--

(후면)

<p style="text-align: center;">0A004C0ECF 076, (고유번호 기재)</p>
--

(주) 색상 흰색 / 재질 아크릴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계량카드 발급대장(제8조 관련)

일련번호	신 청 인					차 량 번 호					카드번호	비고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발급사	차량번호	용도	충중량(공차중량)	차량소유자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입법예고 제출의견

1. 의견접수 내용

- 의견제시자 :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신종철
- 주민지원협의체 주요의견
 - ▶ 첫 번째, 조례안 제4조(대상폐기물 및 처리방법) 제2항 1호 “소각시설 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 한 경우”시장은 매립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소각시설 능력의 30%이내의 폐기물만 매립하는 것으로 제한”할 것
 - ▶ 두 번째, 조례안 제5조(관리·운영) 제1항 3호 재활용선별시설의 위탁 자격에 “주변마을의 소득창출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줄 것
 - ▶ 세 번째, 조례안 제13조(소각열 이용) 제1항 소각열 이용에 있어“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란 조항에“주변지역 소득사업이나 복리후생 지원에 사용하는 경우는 공익으로 본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줄 것을 요구

2. 접수 의견 검토 결과

○ 일 시 : 2011. 3.18 (09:00)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정

가. 조례안 제4조 제2항 1호 - “소각시설 능력의 30%이내의 폐기물만 매립하는 것으로 제한” 의견	-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계절적인 영향을 크게 받아 하절기에는 6~70%증가하는 실정임으로 매립량 제한은 불합리함. -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매립량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소각을 하는 것이지 매립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음.	부	
나. 조례안 제5조 제1항 3호 - “재활용선별시설 위탁자격에 주민지원협의체를 삽입” 의견	-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관련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의견 수용이 어려운 실정임.	부	

<p>다. 조례안 제13조 제1항</p> <p>- “주변지역 소득사업및 복리후생에 사용할 경우 무상지원 규정 삽입” 의견</p>	<p>- 소각열 이용에 있어 공익을 위할 때는 무상 공급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p> <p>- “<u>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소득 사업이나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에 사용 할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u>”는 조항을 신설하였음.</p>	<p>반영</p>	
---	--	-----------	--

끝.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17]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17, 타법개정]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2.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도지사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6.16]

제천시 공고 제 2011 - 238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 2. 24

제 천 시 장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제천시자원관리센터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 자원관리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규정을 수립 필요

3. 주요내용

- 자원관리센터 처리 대상폐기물과 처리방법(안 제4조)
 - 대상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 매립처리 :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과 천재지변 및 시설의 보수·점검 사유 발생시
-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 관리(안 제5조~제6조)
- 자원관리센터의 폐기물 반입허가 및 제한(안 제7조~제8조)
- 자원관리센터 사용자에 대한 반입수수료 징수 (안 제9조)
- 소각열의 공급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3월16일
까지 제천시청 (참조 환경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404, FAX 641 - 5379 담당자 : 조성원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제 천 시



수신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신종철 귀하
(경유)

제목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제출에 따른 검토 결과 회신

1.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 드리며, 주민지원협의체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귀 협의체에서 2011-1(2011. 3.15)호로 제출하신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제시 의견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제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제시 의견	검토 결과	비고
가. 조례안 제4조 제2항 1호 - “소각시설 능력의 30%이내의 폐기물만 매립하는 것으로 제한” 의견	-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계절적인 영향을 크게 받아 하절기에는 6~70%증가하는 실정임으로 매립량 제한은 불합리함. -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매립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소각을 하는 것이지 매립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음.	부
나. 조례안 제5조 제1항 3호 - “재활용선별시설 위탁자격에 주민지원협의체를 삽입” 의견	-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관련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의견 수용이 어려운 실정임.	부
다. 조례안 제13조 제1항 - “주변지역 소득사업및 복리후생에 사용할 경우 무상지원 규정 삽입” 의견	- 소각열 이용에 있어 공익을 위할 때는 무상 공급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소득사업이나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음.	반영

끝.

제천시장

사무관

자원관리팀장

환경과장

협조자

시행 환경과-6610 (2011.03.18.) 접수 ()
우 390-701 충북 제천시 시청길15(천남동 12-2) / <http://www.okjc.net>
전화 043)641-5404 / 전송 043)641-5379 / E-mail : greenjc21@korea.kr / 공개